

7. 骨材採取 許可期間 延長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건설부는 그동안 계속 증대되어온 건설수요에 소요되는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하천법시행규칙중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'91. 12. 3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

그 주요 내용을 보면

- 하천에서 토석·砂礫(이하 “골재”라 한다)을 채취코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, 이 경우 점용 허가기간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종전에는 “허가년도” 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연도 구분에 관계없이 “점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”로 연장기로 했다.
-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에 필요한 횡·종단면도, 실측평면도, 기타 구비서류 등 허가에 필요한 사전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허가가 연중 하반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실제채취기간이 짧아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골재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“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”로 하므로써 동절기 등 골재비수기에 계속적인 채취가 이루어져 비축등이 가능케 됨으로써 골재의 본격수요기인 익년도 4~6월 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케 되었다.
- '91 수도권 골재수급계획 추진현황
 - 동 수급계획에 의하면
 - '91년도 수도권 골재수요를 64,826천 m^3 로 추정하고 이중 40,840천 m^3 는 골

재채취 허가를 통해서 공급하고, 잔여 23,986천m³는 터파기공사, 지하철공사, 단지조성 등에서 생산된 골재를 활용토록 계획한 바 있으며

- 허가공급계획량 40,840천m³에 대해서는 하천골재 20,471천m³, 해사 12,649천m³, 석산골재 7,720천m³로 충당기로 계획한 바 있다.

- 허가실적은 계획량에 99.8%로 12월초까지는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임. 다만 골재별로는 해사가 신도시 부실공사파문 이후 수요량이 감소되어 허가실적이 다소 부진한 편이나 우리 부에서는 이를 대체코자 하천골재추가 허가를 계속 독려하여 하천골재는 당초 허가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음.

(단위: 천m³)

'91. 11. 30 현재

구 분	연간공급계획	허 가 량	대 비(%)
계	40.840	40.773	99.8
하천골재	20.471	21.455	104.8
해 사	12.649	11.598	91.7
석산골재	7.720	7.720	100.0

• 채취실적은 계획량 36.649천m³, 실적 33.674천m³, 대비 91.8% 수준으로 목표량에 다소 미흡하나 이는 정부의 건설수요관리시책에 따라 골재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, 골재비축량도 2,336천m³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, 계절적인 골재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금년도 골재공급은 안정현상을 보일 것임.

(단위: 천m³)

'91. 11. 30 현재

구 분	채취계획량	채 취 량	대 비(%)
계	36.649	33.674	91.8
하천골재	18.113	16.015	88.4
해 사	11.488	9.163	79.7
석산골재	7.048	8.496	120.5

- 또한 건설부는 수도권에서 소요되는 '92 골재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천골재, 석산골재의 지속적인 확대 개발은 물론,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해사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하여
 - 인천항 해사세척수 공급시설을 일일 10천톤이 공급가능하도록 '91. 9. 15 확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일 25,000m³의 해사세척이 가능토록 한 바 있음.
 - 또한 인천항 반입능력 37,000m³중 25,000m³는 위 시설을 이용하여 인천항에서 세척하고 잔여 12,000m³에 대해서는 한강하류고수부지내에 세척시설에 설치하여 전량세척공급함으로써 해사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확대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.